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아파트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동법 57조 8항에 의거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서류제출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 예약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1/gimhae2/>)로 예약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및 심사기한	• 2021.04.30.(금)부터 ~ 2021.05.07.(금) 17:00까지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전원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경남 김해시 안동 360-42 / 055-328-5677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 제출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이 안될 경우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소득증빙 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참조]	
추가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군인)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해당자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및 주소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2021.02.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씀을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으로 인정)

소득입증 제출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2021년 04월 09일) 발급분만 가능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산정용 내역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해당 직장 및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이 필수로 상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